

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4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폐지이유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(에너지관리자채용신고 등) 및 제45조(사업의폐지신고등)의 규정이 삭제('97. 8.22)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100조(과태료) 동법 제25조(에너지사용량신고등), 동법 제59조(검사대상기기조종자채용신고 등)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개정('98. 4. 1)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이중규제 이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